
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  
(세무2과 환급금담당)  
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

**02-3396-8919**  
(환급문자신청 전용번호)  
※ 단문만 가능  
환급번호, 이름, 은행, 계좌번호,  
입력후 신청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.

서울신당  
현대우편취급국  
요금후납

0 4 5 5 8

**지방세환급금 지급(총당)통지서 재증**

http://etax.seoul.go.kr  
ARS 1599-3900  
FAX 02-3396-8712 신청가능

환급번호 140-2019-000588-000  
안내 전화) 02-3396-5214

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1층 (무교동,  
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, 서울특별시청계청  
사)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

04520

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신 후 바로 위 점선 따라 절취하시고 이곳에 붙여서 봉합하신 후 우편함에 넣어주세요(우표는 붙이지 마세요)

**【지방세환급금 지급(총당)통지서】**

환급번호: 140-2019-000588-000		[환급결정일: 2019/01/30]					
권리자	성명(법인명)	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***830-0*****	
	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1층 (무교동,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, 서울특별시청계청사)					
과오납내역	연도	기분	세목	과오납연월일	환금액	환급가산금	환급금합계 (환금액+가산금)
	2018/01	신고분	자동차세 자동차 01나8657	2019/01/22	₩18,460	₩50	₩18,510
총당내역	연도	기분	과세번호	세목	미납액	총당금액	총당후 미납액
						0	0.0
정산내역	환급금합계	₩18,510	총당금액	0	채권압류액	0	총당후잔액 (환금액)
							₩18,510
위의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. ※환급사유: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말소, 이전 2019년 0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							

**지방세 환급금 청구서 겸 환급계좌 신청서**

화살표 방향 안쪽으로  
접어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				【환급번호: 140-2019-000588-000】			
권리자	성명(법인명)	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***830-0*****	
	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1층 (무교동,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, 서울특별시청계청사)					
연도	기분	세목	환금액 합계	총당금액	채권압류액	청구금액	
2018/01	신고분	자동차세 자동차	₩18,510	0	0	₩18,510	
환급받을 계좌	금융기관명 :		계좌번호 :		연락전화 :		
※ 주의 : 계좌번호는 권리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(타인계좌, 차명계좌로는 입금이 안됩니다)							
위의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청구자: (서명 또는 인)							

※ 공지사항

- 환급금을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 구청에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또는 FAX신청가능)  
-신청접수된 계좌정보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예금계좌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, 추후 환급금 발생시 이 계좌로 입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을 통해 대리인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권리자가 작성한 환급금 양도신청서와 양도·양수인 신분증 사본, 양수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

# 환급금 양도신청서

양도인	성명 (법인명)	(서명 또는 인)	주민(법인) 번호	
	주소			
양수인	성명 (법인명)	(서명 또는 인)	주민(법인) 번호	
	주소			
환급번호		환급금		양도금액
본인은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(양도자) 구청장 귀하 (서명 또는 인)				
구비서류 : 1. 환급금 양도신청서 2. 양도·양수인 신분증 사본 3. 양수인의 통장사본 4.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(양도신청서 인감날인)				

# 위임장

아래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방세 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환급번호				
위임인	성명 (법인명)	인감 날인	주민(법인) 번호	
	주소			
대리인	성명 (법인명)	주민(법인) 번호		
	주소			
※ 대리인은 위임인(납세자)의 '인감증명서'를 지참하여야 하며, 환급금의 양도시에는 「환급금양도신청서」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				

보내는 사람

□	□	□	□	□
---	---	---	---	---



받는 사람

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(예관동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세무2과 환급금담당)

04558

## 지방세환급금 수령방법 및 안내문

### ◎ 지방세환급금이 무엇인가요?

● 귀하께서 우리 구청에 납부하신 세금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.

### ◎ 지방세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● 인터넷·스마트앱 또는 ARS신청 : <http://etax.seoul.go.kr>(인터넷)나 stax(앱전용)에 접속 또는 ARS 1599-3900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환급금 조회 및 신청

☞ 단,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로서 납세자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, 개인납세자에 한합니다.

● 전화 및 팩스신청 : 환급청구서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해당구청에 전화 및 팩스신청(FAX.02-3396-8712~8713)

☞ 성명, 주민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, 전화번호를 통보

● 우편신청 : 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'보내는 사람'이 밖으로 향하게 접어 풀칠하신 후 봉합하여 해당구청으로 우편발송

### ◎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(사랑의 열매)에 본인명의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

● 「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」 및 ARS(1599-3900) 신청가능

【환급금 지급기한】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